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29 발의연월일: 2024. 1. 15.

발 의 자 : 엄태영 • 주진우 • 서범수

조지연 • 박덕흠 • 서천호

박형수 · 유상범 · 강명구

박정하 • 고동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	등) ①
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	
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	
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	
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	
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<u>2025년 12월 31</u>	<u>2028년 12월 31</u>
<u>일</u>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「한국	<u>일</u>
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	
촌공사(이하 이 조 및 제13조	
에서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	
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	
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